EBP 기반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클리닉 운영 모형 매뉴얼

소수연, 서선아, 이태영, 이지은





목차 C·O·N·T·E·N·T·S

Ι.	성	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개요 1
	1.	상담클리닉 운영 모형 개발 과정1
	2.	상담클리닉 운영 모형2
Π.	상	담자 편
	1.	긴급대응 단계6
	2.	상담개입 단계10
		1) 초기 단계10
		2) 중기 단계13
		3) 후기 단계15
Ш.	위	기관리팀 편18
	1.	긴급대응단계 : 위기관리팀 구성 및 운영18
	2.	상담개입 단계 : 자문 및 슈퍼비전21
부	록.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및 정보
	1.	해바라기센터 지원 내용 및 현황
	2.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Q&A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Ι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개요

1. 상담클리닉 운영 모형 개발 과정

성폭력 피해 개입 상담클리닉 운영 매뉴얼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에서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는 지침서이다. 최근 디지털 성폭력 등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관심과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019년 청소년상담 현장의 상담자들이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개입을 지원하기위해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을 개발하는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후속 연구로 2019년에 개발된 상담개입 매뉴얼을 청소년상담 현장에운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 상담 현장에 적용한 효과성 연구를수행하였다. 본 운영 매뉴얼은 2020년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운영 모형으로, 실제 상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1차년도 연구(2019년)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 개발

2차년도 연구(2020년)

• 'EBP기반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클리닉 운영 모형' 개발

그림 1 연구 진행 과정

 \gg

본 매뉴얼은 '상담자' 파트와 '위기관리팀' 파트로 구성된다. '상담자' 파트는 접수면 접부터 사례 평가, 상담개입 방법 등 상담자의 실제 내담자 개입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위기관리팀' 파트는 기관 내 위기 청소년 개입을 위한 팀 구성 방향과 사례지도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담자와 위기관리팀이 상담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긴급대응 단계', '상담개입 단계', '추수관리 단계" 등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중 '상담자' 파트의 상담개입 단계의 세부 내용은 2019년에 개발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2. 상담클리닉 운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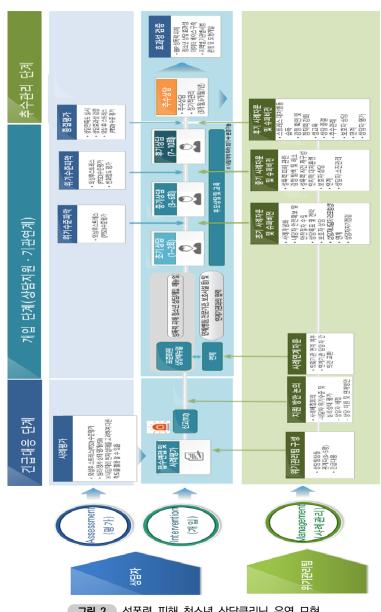


그림 2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클리닉 운영 모형

운영 모형은 크게 상담자와 위기관리팀이 사례를 어떻게 진행하고 관리하는지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상담 현장에서 성폭력과 같은 고위기 사례는 위기관리팀의 슈퍼 비전 및 자문 등과 같은 지도하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본 모형의 주요 방향 이다. 이에 따라 기관에서는 상담팀장을 주축으로 상담 경험이 풍부한 상담자들로 위기관리팀을 구성하여, 성폭력 피해 청소년 사례 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 하는 기능을 한다. 즉 상담자는 평가(assessment)와 개입(intervention), 위기개입팀은 사례 관리(management)가 핵심 활동이다.

본 매뉴얼에서는 상담자와 위기관리팀이 운영 모형을 토대로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 역할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평가와 개입, 관리는 긴급대응단계, 개입단계, 추수관리 단계로 진행된다. 긴급대응단계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발굴되고 의뢰되었을 때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며, 개입단계는 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 및 연계·자문 등이 지원되는 단계이다. 추수관리단계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의 경우, 다양한 스트레스로 증상이 재발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수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입을 하는 단계이다.

먼저 상담자의 주요 역할은 평가(assessment)와 개입(intervention)이다. 평가는 위기사례 개입에 중요한데. 즉 위기 수준에 따라 이후 개입 방향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가는 크게 사례 평가와 효과성 평가로 이루어지며, 긴급대응 단계와 개입 단계에서 수행된다. 특히 긴급대응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위기 수준과 향후 개입 방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긴급대응 단계의 접수면접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평가는 CROPS(한국판 아동용 외상후 증상보고)와 CRIES(한국판 사건충격 척도 수정판)로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다. 이때 성폭력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를 통해 내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상태를 객관적의로 확인하도록 PROPS(보호자용 외상후 증상보고) 실시를 포함한다. 더불어 내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및 정서 상태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ASEBA검사를 함께 실시한다. 이외에 MMPI와 같은 검사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위험 수준을 체크하는 CROPS나 CRIES, 부모용 PROPS는 상담 중기와 종결 시에도 실시하여 내담자의 변화를 지속 관찰하며. ASEBA와 함께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평가도구 및 접수면접을 통해 내담자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여 상담 전략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추수관리 단계에서 상담자는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사례를 관리한다.

각 기관에서는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개입 시 이와 같은 평가도구를 상담 전과 종결 시 실시하여 상담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에서도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측정한 사전·사후 상담효과성을 분석 제공 하도록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여, 상담 현장에서 보다 효과성 높은 성폭력 피해 사례를 개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자의 두 번째 역할인 개입(intervention)은 2019년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팀의 역할을 살펴보면, 긴급대응단계에서 사례 평가 결과 및접수면접 내용을 토대로 내담자의 위기 수준과 심리·정서 상태를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논의하여 개입 계획을 세운다. 이때 내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관에서 상담 개입이 가능한 내담자인지 판단하고, 만일 기관에서 개입 가능한 사례라고 판단하면, 적합한 상담자를 배정한다. 또한 병원이나 법률기관 등 연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개입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 사례의 경우, 유관전문기관을 통해 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연계에 대한 사안을세밀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위기개입팀은 기관 연계 관련 사항을 의뢰하는 것뿐 아니라, 이후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위기관리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상담 초기부터 종결단계까지 상담자의 개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슈퍼비전과 자문을 실시하여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성폭력과 같은 위기 사례의 경우, 상담자의 상담 역량과 전문성이 상담 성과에 영향을 주므로, 상담 단계마다 위기관리팀의 정기적인 사례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이때 내담자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담 중기와 종결 시기에 실시하는 평가 도구를 통해 개입의 효과를 점검해볼 수 있다.

위기관리팀은 상담자의 사례 개입 시 부모나 보호자를 상담하고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문을 한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주위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들의 2차 가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나 보호자를 협조자로 동참시키는 방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성폭력 사례를 진행하는 상담자들은 대리외상을 경험하거나 상담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등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개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 3]은 참고로 성폭력 피해 사례가 접수된 후 기관의 사례 진행 과정을 흐름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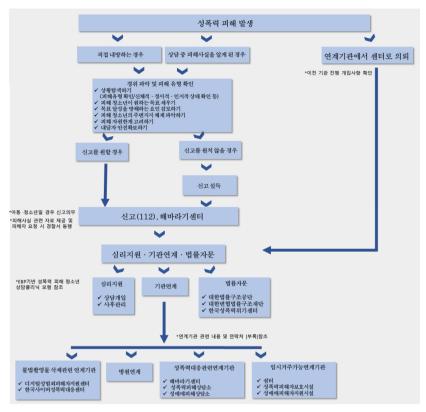


그림 3 성폭력 사례 진행 흐름도

〈출처: 디지털성범죄 피해 청소년 개입 매뉴얼(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첫째, 내담자가 청소년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둘째, 유관기관에서 센터로 청소년을 의뢰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피해 청소년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자는 성범죄 피해 사례접수를 위해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신고의무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한다. 이후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법률 지원, 병원 진료, 거주 시설 등 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관기관에 연계한다. 만일 디지털 성범죄 사례인 경우, 불법촬영물 삭제, 법률자문 및 임시 생활시설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이미 신고를 한 후 유관기관에서 상담자가 근무하는 기관으로 내담자를 연계하는 경우, 내담자가 이전 기관에서 받았던서비스를 확인하고 심리지원을 한다.

Ⅱ 상담자 편

1. 긴급대응 단계

성폭력 피해청소년이 센터에 의뢰되면 접수면접자와 접수면접을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이 직접 피해사실을 보고하려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청소년은 피해 이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아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 학원, 가정 등 생활반경을 공유하는 지인 또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의 경우 피해 청소년은 피해신고로 인해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시점이 한참 경과한 후 피해를 보고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성폭력 피해 사례가 처음 접수되는 것은 드물다. 대부분 경찰, 해바라기센터에서 신고 및 피해지원이 이루어진 후, 일상복귀를 위해 상담에 연계되거나 다른 호소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던 중 성폭력 피해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상담목표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면접자와 상담자는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피해자의 피해상황과 심리 사회적 상태를 점검하여 일차적으로 필요한 지원과정을 계획해야 한다.

긴급대응 단계에서 접수면접자는 위기관리팀과 함께 위기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어떤 개입이 필요할지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접수면접자는 접수면접과 사례평가를 통해 청소년의 위기수준과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위험요인, 보호요인, 피해 청소년의 욕구 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 특성상 경찰 신고 또는 피해 후유증 발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위기관리팀과 협조하여 대응한다.

1) 접수면접 및 사례평가

(1) 신뢰감 형성

접수면접은 피해 청소년이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접수면접자(또는 상담자)와 대면하는 단계이므로, 피해 청소년을 안정시키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 접수면접자는 내담자에게 침착하게 반응하면서 수용적 태도를 취한다.

6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표 1 접수면접 시 유의사항

- 내담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되 성폭력 관련 세부 내용이나 감정을 수사하듯 질문하지 않는다.
- 사건의 발생을 은근히 내담자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비난하지 않고, 사건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표현이나 건을 주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대처를 미루지 않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 지나치게 피해경험에 공감하려고 하지 말고, 막연한 위로도 지양한다.
- 피해상황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나 재연 요구 등 과도한 피해사실을 확인은 지양한다.
- 가해자 편을 드는 듯한 언행에 주의한다(예. '남자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니?', '왜 그 시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니?' 등).
- 의학용어(예. 음경, 질, 항문 등), 수사·법률용어(예. 간음, 기소 등)는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

(2) 구체적인 정보 파악

- O 피해경위: 피해기간, 피해횟수, 피해장소, 피해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등
- O 피해상황에 대한 대처: 신고·사건처리 여부, 도움요청 기관 및 지원받은 서비스
- 기타 위험요인: 자해·자살시도, 학업중단, 약물 등과 같은 위험 수준, 상담 외 서비스 지원 필요성
- O 안전장치: 성폭력 피해 재발 위험시 도움요청 자원, 부모 및 보호자 연락처

(3)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접수면접은 기본적으로 상담신청서, 상담동의서(필요시 부모상담 동의서도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자살이 의심되는 경우 자살 금지 서약서를 준비한다. 상담동의서 서명 시 자살 및 자해의 경우 상담 비밀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지한 후 서명 받는다.

(4) 안전 확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상담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내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즉각적인 의료·법률지원이나 가해자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한 내담자를 선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표 2 고위험 내담자를 선별하기 위한 주요 질문 및 대처

질문	상담자 대처
언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나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지 72시간 이내인 경우,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 연계를 통해 신체적 외상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 추후 법적조치를 위한 증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성폭력 이후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나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외상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외상에 대한 의료적 개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가해자와 같이 살고 있나요?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가해자와 동거 중인 경우에는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비가해 보호자의 인적 연계망을 활용하거나 청소년쉼터 등을 연계하여 내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도록 신속 하게 대처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이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칠 일이 있나요?	같은 학교나 학급, 학원 등 동일한 생활반경 안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경우, 피해경험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상담자는 가해자 처벌, 전학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Wee 클래스에 상담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3 성폭력 관련 대표 연계기관

연계 서비스	연계 기관
성폭력 치료 및 상담 지원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성폭력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사회적 지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스마일센터,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등
임신 관련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5) 내담자 위험 수준 및 심리상태 평가

- O 한국판 아동용 외상후 증상보고(CROPS): 특정 사건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제한되기보다 넒은 의미의 외상후 증상을 평가한다.
- 청소년 행동평가(YSR): 청소년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와 적응척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불안 및 우울, 위축 및 우울, 신체증상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규칙위반, 공격행동으로 구성된 외현화 문제를 평가한다.

(6) 보호자 상담

- O 보호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용 외상후 증상보고(PROPS)검사를 실시한다.
- 보호자에게 내담자의 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 신체적 증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여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O 보호자가 느끼는 정서적 좌절, 자책과 같은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돕고 공감한다.
- O 상담 비밀보장 및 상담구조화, 내담자의 지지체계로서 보호자의 역할 등을 설명한다.

2) 신고

- O 내담자는 신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거나,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경우 피해로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지지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
- 내담자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담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신고 거부 이유를 탐색하고 설득하여 신고한다. 수사기관에 신고 시 내담자와 논의하여 피해 사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내담자 요청 시 경찰서에 동행하여 피해 내담자를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한다.

표 4 신고를 거부하는 내담자 개입

- 성폭력 피해 직후 피해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므로 먼저 내담자의 정서적 안정 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서 법적 처리를 우선시 하여 신고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성폭력 피해 관련 법적 규정과 기해자 처벌 기준에 대해 안내하여 피해 청소년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함

표 5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법률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2. 상담개입 단계

1) 초기단계

- 목표 : 평가 도구 및 면접 내용을 종합하여 외상후 증상 위험수준 평가
- 주요내용: 초기단계에는 외상후 증상 위험수준 및 내담자의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여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외상후 증상 및 위험수준 평가

O 상담자는 외상후 증상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척도와 내담자 정보 기록지를 활용할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 평가 도구〉

- 한국판 아동용 외상후 증상보고(CROPS)
- : 특정 사건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제한되기보다 넓은 의미의 외상후 증상 평가
- 한국판 사건충격 척도 수정판-아동용(CRIES)
- : 외상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PTSD 발병 위험 측정
- 보호자용 외상후 증상보고(PROPS)
- : CROPS와 함께 보호자가 관찰한 아동·청소년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측정

〈내담자 정보 기록지〉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 86p 참고

• 성폭력 피해 상황. 가해자 특성 및 관계. 청소년의 반응. 지지 체계 등

표 6 발달단계 따른 성폭력피해 증상 및 특징

- 초기청소년(초등학생): 섭식장애, 설명할 수 없는 건강문제, 청결에 대한 과도한 집착, 완벽주의나 과도한 성취주의. 평소 갑작스러운 침묵이나 행동화
- 청소년(중·고등학생): 두통, 발진, 위장장애 등 신체적 문제, 식욕 및 수면장애(불면), 강박행동, 성적으로 공격적 행동, 임신, 성적 혹은 집중력 저하, 가족 및 또래 활동에 흥미 감소, 사회적 위축이나 철수, 집/학교에서의 공격적·반항적 행동(따돌림), 비행/일탈행동(무단결석, 가출, 술·담배 등 약물문제 등), 자해/자기파괴적 행동 및 자살시도

[출처] 양미진 외(2014). 성폭력피해 청소년 개입 매뉴얼 수정.

표 7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기간에 따른 증상

기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성폭력 피해 발생 당일	외상(Trauma) 경험에 노출			
피해 발생~ 2일	급성스트레스 반응(Acute Stress Response, ICD-10 기준) • 다른 정신정애가 없을 경우, 비통상적 신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 반응으로 발생, 수시간 혹은 수일 내 소실되는 상당한 중증의 일시적 장애 • 주증상: 주로 불안 증상, 스트레스 발생 후 1시간 이내 시작, 일시적 스트레스는 8시간 이내, 지연성 스트레스는 48시간 이내 증상이 시라지기 시작해야 함(해리장애를 동반하지 않음)			
2일 후 ~ 1개월	급성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Respones, ICD-10 기준) • 외상성 사건 노출: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을 경험함 • 해리증상 중 3가지 이상(정서 반응 마비, 소외, 결핍에 대한 주관적 느낌 / 주변에 대한 자각 감소 / 현실감 소실 / 이인증 / 해리성 기억 상실) • 지속적 재경험, 외상을 회상시키는 자극 회피, 현저한 불안 및 과각성 • 주로 2일간, 길게는 4주간 지속, 외상적 사건 후 4주 이내 증상이 나타남			
	충격적충격적스트레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Trauma-and Stressor-Related Disorder) 외상사건 경험 후 1개월 이상 후유증 경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사건 경험 후 3일~1개월 이내 후유증 경험: 급성 스트레스 장애 스 사건으로 정서적·행동적 문제 3개월 이내 발생,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이내 회복: 적응장애(DSM-5 진단기준)		
	외상 후 :	스트레스 장애 증상		
1개월 이후	지속적인 재경험	• 경험한 사건을 반복 기억하거나 악몽을 꿈 • 경험한 사건이 눈 앞에 펼쳐져 있는 듯한 생생한 감각으로 되살아남(플래쉬백 등)		
	회피	 경험 사건과 관계있는 화제를 피하려 함 경험한 사건을 기억할 수 없도록 기억이나 의식에 장애가 생김 (넋을 잃는 등) 사람이나 사물에 관심이 줄어들고 주위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짐 		
	과각성	• 불면, 신경질적 태도, 화내기 쉬움, 불안정 등 • 집중의 어려움, 극단적 경계심, 작은 일이나 작은 소리에도 놀람 등		

(2)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파악

- 우울, 자살·자해 위험, 무단결석, 기출, 랜덤채팅 등 정서 및 행동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다.
- O 내담자의 지지체계를 탐색하여 보호요인을 파악한다.

〈지지체계 탐색 질문〉

- 지금 누구와 살고 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 가족관계는 어떤가요? (부모, 형제, 친척 등)
- 친구. 선후배관계는 어떤가요?
- 평소에 힘들 때 누구랑 이야기 하나요? (또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 성폭력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 만약 성폭력피해에 대해 얘기한다면, 누구에게 하고 싶은가요?
- 성폭력 피해 이후 가족, 친구 등 대인관계에서 겪는 변화와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3) 관계형성 및 상담구조화

성폭력 위기 개입이 마무리되고 내담자와 상담을 시작하면, 상담구조화를 한다. 상담 구조화는 내담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과 상담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라포 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작업이다. 성폭력 피해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조차 사건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들은 상담자들이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복잡한 감정을 공감하고 심리 상태를 민감하게 감지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상담구조화를 위해 내담자와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 상담 횟수, 상담 기간
- O 비밀보호의 중요성과 비밀보호의 예외적 상황¹⁾(내담자에게 강조해야 할 사항 참조)

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의무〉

- 가) 청소년상담사는 내담자와 부모(보호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나) 청소년상담사는 상담기관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과 관계자슈퍼바이저주변인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내담자 상담 시 사전에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상담 과정에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비밀보장의 한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린다.
- 라)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내담자 상담 시, 상담 의뢰자(교사, 경찰 등)에게 내담자 및 보호자(만 14세 미만 내담 청소년의 경우)의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마) 청소년상담사는 비밀보장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청소년 내담자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용어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 바) 청소년상담사는 강의, 저술, 동료자문, 대중매체 인터뷰, 사적 대화 등의 상황에서 내담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나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내담자의 권리: 내담자에게 자신이 가진 권리(예. 언제든지 상담을 그만둘 수 있다, 원하는 경우 상담자를 바꾸거나 상담자의 수퍼바이저 혹은 관리자와 이 야기 할 수 있다)에 대해 알려준다.

2) 중기단계

목표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감정에 대한 이해와 생각-감정-행동의 관계를 이해한다.

※ 중기단계에서는 '부정적 감정 조절하기', '성폭력과 관련된 감정을 탐색하고 생각-감정-행동의 관계 이해', '성폭력 사건 재구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자살 위험요인 및 원인에 대해 탐색하고 내담자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1) 성폭력 피해 관련 감정 탐색 및 해소

- O 성폭력 피해 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내담자가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 O 성폭력 피해 관련 주요 감정을 탐색한다. 상담자는 아래의 질문을 활용하여 작업한다.
- 압력이 50이상일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이나 징후가 있나요?
- 나는 신체적인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 자각을 할 수 있나요?
-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나만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O 성폭력 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완화를 위해 심호흡, 복식호흡, 착지법, 나비 포옹법 등과 같은 이완법을 내담자에게 안내하고 함께 해본다.

① 심호흡

"긴장을 하거나 불안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후~'하고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처럼 심호흡은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면서 풍선에 바람을 부는 것처럼 천천히 끝까지 숨을 내셔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슴에서 숨이 빠져 나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숨을 천천히 내셔봅니다."

② 복식호흡

"호흡을 할 때 풍선을 분다는 느낌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숨을 내쉴 때는 숨이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코로만 호흡을 하며 천천히 깊게 숨을 아랫배 깊숙이 내려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느낌에 집중해봅니다."

③ 착지법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음을 느껴 봅니다.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고 발이 땅에 닿아있는 느낌에 집중해봅니다."

- 몸과 지면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닿아 있는 것을 느껴 보는 연습은 감정, 감각, 생각들로 인해 쉽게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느낌과 안전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로 혼란스럽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지금-여기, 나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 지시문을 저장장치(해드폰 등)에 녹음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실습해볼 수 있도록 한다.

④ 나비 포옹법

"나비 포옹법은 갑자기 긴장이 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고통스러운 장면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이 빨리 지나가도록 자신의 몸을 좌우로 두드려 주고 '토닥토닥' 하면서 안심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두 팔을 가슴 위에 교차시킨 상태에서 양측 팔뚝에 양손을 두고 나비가 날갯짓하듯이 좌우를 번갈아 가며 두드려 줍니다."

이외에 내담자가 감정적인 혼란을 겪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 현실에 집중하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라운딩 기법을 안내하고 상담에서 함께 해본다.

〈그라운딩 기법〉

땅에 발을 딛는다는 의미로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가 감정적인 혼란을 겪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 현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그라운딩의 주요 방법은 정신적, 신체적, 진정형 3가지 방법이 있다. '정신적'이란 마음에 집중하고 '신체적'은 감각(예, 촉각, 청각)에 초점을 맞추며, '진정형'은 자신에게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행동활성화 기법

O 상담자는 행동활성화 기법을 사용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 시키는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부정적인 기분을 변화시킨다.

14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O 가능한 경우, 내담자가 한주 동안의 활동 기록을 작성하여 객관적으로 자기 행동을 점검하고 상담시간에 함께 나눈다.

(3) 생각-감정-행동의 상관관계 이해하기

- O 앞서 성폭력 피해 관련 감정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감정-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 이 특히 이후에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다루는 작업에서 인지 작업과 노출치료 전에 개인의 생각이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행동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다룬다.

(4) 성폭력 사건 재구성 및 인지적 대처 훈련

- 상담자는 내담자가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외상 이야기 만들기'를 함께 해 볼 수 있다. 진행하기에 앞서 내담자가 여러 회기에 걸쳐 충분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심리교육을 실시한다.
-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폭력 사건 이야기를 이야기하도록 개입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전체 삶에서 외상사건을 조망하도록 진행한다.
- 상담자는 내담자가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의 생활적응, 삶의 방향을 계획할 수 있도록 '외상 이야기 만들기'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

3) 후기단계

목표 : 스트레스 대처능력 함양 및 생존자로서 삶의 방향 재설정

※ 후기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성교육', '강점 확인 및 잠재력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의사 결정능력 및 성교육을 통해 생존자로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1) 스트레스 관리

상담 종결 후 내담자가 피해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맞닥뜨리거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담에서 논의한다.

- 우선 내담자가 신체·정서·행동의 징후를 통해 스트레스 경고 신호를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다.
- O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트레스 경고 신호를 자각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긴장 이완하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법을 연습한다.

〈스트레스 대처 방법〉

- 오감활용 기분전환법: 오감을 활용하여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 질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해본다.
 - 예) 시각-가고 싶은 휴양지 사진 보기, 영화보기/미각-아이스크림 맛보기, 좋아하는 음식 요리해서 먹기/ 청각-좋아하는 음악 듣기, 시냇물 소리 듣기/촉각-강아지 털 쓰다듬기, 거품목욕하기/후각-좋아하는 로션 바르기, 향수 뿌리기
- 나만의 안전지대 만들기: 내담자가 불안하거나 마음이 긴장 되지 않을 때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안전지대)를 상상할 수 있다.
 - ※ 상담중기-그라운딩 기법 활용
- 내 마음의 색깔: 피해 당시 겪었던 공포와 분노 등의 부적인 감정을 색채로 자신의 감정 또는 관심을 찾아보도록 한다.
 - 예) 떠올린 경험들에 대한 각각의 감정을 색깔로 나타낸다면? 가장 힘들 때 떠오르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그 색깔을 떠올리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 자기 돌봄 메시지 찾기: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를 때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self-talk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도록 한다.
 - 예) "친구와 다시 잘 지낼 수 있어", "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난 괜찮아, 난 강해졌어", "여기는 안전해. 난 괜찮아"

(2) 성교육

- 상담자는 내담자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적인 관심과 욕구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주되 성과 관련된 행위를 결정할 권리는 내담자 자신에게 있음을 설명한다.
- O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이성관계와 성 관련 정보를 다룬다.

표 8 성적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

긍정적 자기개념 갖기	 멋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기 나의 외모, 신체에 자신감 갖기 자기마음 잘 알기, 자기감정 알기 자기감정 알고 표현하기 호신도구 가지고 다니기 	
건강한 관계 맺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 알리기 거절하기 / 거절을 수용하기 고민상담할 사람 알아두기 타인의 감정 인식하기 	 타인에게 감정 표현하기 타인의 분노에 대처하기 / 비난에 대처하기 놀림에 반응하기

(3) 강점 확인 및 잠재력 강화

- O 상담자는 내담자가 피해자의 프레임을 벗어나 생존자로서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삶의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지한다.
- 상담자는 내담자가 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일 또는 강점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내담자가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위해 강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과 당신의 강점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당신이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강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4) 상담 종결 및 추수상담 계획

- O 지난 상담과정과 상담에서 느낀 점, 상담 이후 발생할 수 있을 어려움에 대해 나누다
- 상담 종결 후 3개월이나 6개월 등 일정 기간 후 추수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고 만일 이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다시 상담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O 내담자가 상담 종결을 염려하면, 종결 후 정기적으로 메일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Ⅲ 위기관리팀 편

1. 긴급대응 단계 : 위기관리팀 구성 및 운영

위기관리팀은 상담자에게 위기사례 개입에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여 내담자를 최적의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이는 상담 효과를 향상 시키고, 상담자의 소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위기관리팀은 사례 접수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개입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최대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입은 위기사례를 진행하는 상담자의 부담과 불안을 감소시켜 내담자 에게 안정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개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위기관리팀의 역할은 상담단계에 따라 긴급대응단계, 상담단계, 추수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긴급대응단계에서 위기관리팀은 내담자의 위기수준 평가, 긴급대응, 사례 배정, 상담개입 및 지원방안 논의 등 중요 사항들을 결정한다. 둘째, 상담단계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상담개입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이때 단계별로 사례 자문 및 슈퍼비전이 위기관리팀의 핵심 역할이다. 셋째, 추수단계에서 위기관리팀은 상담 종결 후 상담자의 추수상담 진행 방안 등을 확인한다.

1) 위기관리팀 구성

- 이 위기관리팀은 센터 내 위기사례를 관리하고 위기 관련 주요 사안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위기사례 관리를 주로 관리하는 상담팀장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이 위기관리팀의 구성은 성폭력 사례에 대한 즉각적이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상담 경력이 풍부하고, 성폭력 사례 경험이 많은 상담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효과적 이다. 또한 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안전망 인력,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내 결정권이 있는 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따라서 위기관리팀 구성은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상담팀장, 청소년안전망 팀장, 전일제 동반자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센터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으로 한다.

2) 위기관리팀 기능

(1) 내담자 위기 수준 평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처음 접수상담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호소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과거 성폭력 피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되는 경우도 많다.
- 접수상담 시 내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할 경우, 위기관리팀은 긴급 대응이나 타 기관 연계,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기관리팀은 사례 접수 후 내담자의 위기수준을 평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위기수준 평가는 접수상담 시 얻은 내담자 정보를 토대로 한다. 접수 시 내담자에게 실시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위기수준과 내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만약 내담자가 평가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되면, 내담자의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 상황을 파악한다.
- 이 위기수준 평가는 내담자의 현재 상태 파악, 지속적인 피해 여부, 가해자와의 분리 여부, 보호자 도움 정도 등을 충분히 파악함으로써 내담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 피해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접수상담 시 공감과 지지적인 태도로 내담자를 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위기관리팀은 사전에 상담자에게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교육하여 상담자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내담자를 대하고,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긴급대응

 이 위기관리팀은 위기수준 평가 후 내담자의 상태가 위기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내담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에 연계한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세 미만 내담자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나이와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신고해야 하는지 파악한다. 위기관리팀은 내담자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파악하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상황에 따라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내담자에게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하여 최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팀은 지역 내 유관기관의 특성과 제공 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연계 기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내담자의 불안을 낮추어 주는 것이 준다.

(3) 사례배정회의 및 슈퍼비전

- O 기관연계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이후 상담서비스 지속을 요청할 경우 센터에서 사례를 관리 할 수 있다.
- 상담자 배정은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내 상담 경험과 상담자 상황을 고려하여 한다. 대체로 성폭력 피해 내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예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기 사례를 개입해 본 경험이 많은 상담자에게 우선적으로 사례를 배정한다.
- 그리고 사례 배정 시 상담자의 진행 사례 수나 맡겨진 업무의 양, 강도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담자가 위기사례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현 위기사례에 대한 지원업무를 다른 동료가 맡을 수는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상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율한다.
- 위기관리팀은 상담자에게 사례 진행 시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사례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상담자 소진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4) 상담 및 지원방안 논의

- 위기관리팀은 사례배정회의에서 상담자를 배정한 후에는 내담자에게 맞는 상담방향과 내담자에게 필요한 자원연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상담자와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에 대한 격려와 지지도 포함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담자가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한다.
- ㅇ 성폭력 피해 사례의 경우, 내담자에게는 정서적인 상담 이외에도 신체적, 경제적,

법률적인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원 연계 방안 논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 이 피해 상황이 사례배정 후에 확인 된 경우, 내담자와 보호자를 설득하여 신고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때 내담자에게 신고절차 이후 상황들을 안내하여 내담자의 불안을 낮춘다.
- 아레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의료지원, 일시보호, 법률지원 등의 긴급 지원을 진행하기도 한다. 산부인과 의료지원을 할 경우에는 증거확보를 위한 도구가 잘 갖추어져 있는 병원으로 연계해야 하며 진료 시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려 증거를 위한 수집 자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증거수집 이외에도 피해자의 치료와 질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근친성폭력이나 주변사람이 가해자일 때 보호자의 비협조 등 가정에서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으므로, 쉼터 등 시설 입소가 필요하면 연계하여 내담자를 보호해야 한다.
- 그리고 사건의 법적 해결과정에서 내담자가 2차 피해로 고통이 가중되는 경험을할 수도 있다. 상담자는 사례에 따라 내담자의 조사 동행, 재판 동행을할 수도 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수사 절차 등을 안내하여 내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상담개입 단계 : 자문 및 슈퍼비전

본 성폭력 피해 상담클리닉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기관리팀은 상담자에게 정기적으로 사례에 대한 자문이나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성폭력과 같은 위기상담을 할경우, 자문이나 슈퍼비전은 내담자 안전뿐 아니라 사례의 심각 정도나 다양한 개입에 대한 고민 등 상담자가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는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상담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자문 또는 슈퍼비전이므로, 위기관리팀은 내담자 및 상담자 보호를 위해 사례에 대한 자문이나 슈퍼비전을 실시한다. 이 절에서는 기관 내 위기관리팀이 성폭력 피해 청소년 사례 자문 또는 슈퍼비전 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과 진행 방법 등을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 매뉴얼'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상담클리닉에서는 10회기를 기준으로, 상담 1-2회기 후, 3-6회기 후, 7-10회기(종결) 후에 최소한 세 번의 자문 또는 슈퍼비전을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례에 따라 회기 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맥락에서 상담 초기, 중기, 후기로 이해하면 된다.

1) 상담 초기 자문 및 슈퍼비전

본 매뉴얼은 상담 초기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PTSD) 수준과 심리·정서 상태 평가를 통해 사례개념화를 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 목표 및 전략 설정, 구조화를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살이나자해 등과 같은 위기 개입을 위해 내담자 안전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위기관리팀에서는 상담자가 상담 초기 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다.

(1) 외상후 증상 및 위험수준 평가

- O 상담자가 내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PTSD)' 위험 수준 및 관련 증상을 평가 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 이해를 위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등 다각도로 내담자
 상태를 파악하였는지 확인한다.
- ▷ 필수 검사: 한국판 아동용 외상후 증상보고(CROPS), 보호자용 외상후 증상보고(PROPS)
- ▷ 그 외 활용 가능한 평가도구: YSR, CBCL, MMPI-A, HTP, KFD, SCT 등

〈위험요인 탐색〉

- 자살 위험 탐색: 자살 사고 여부, 자살 시도 여부·방법·주변사람의 반응, 추후 자살 시도 계획 등
- 자해 위험 탐색: 자해 경험, 구체적 자해 도구 및 방법, 빈도 및 시작 시점, 자해 장소, 자해 전 생각과 느낌. 자해 후 생각과 느낌. 자해를 아는 사람, 자해 이유 등
- 행동화 문제 탐색: 학교 규칙 위반, 징계, 가출, 폭력 행동, 성문제 처벌 경험 등
 - 이 위험요인 이외에도 내담자의 가족 및 친구관계, 평소 대화상대 등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함께 나누고 지지받을 대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내담자 안전 확보 및 안전절차 수립

- 아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앞에서 파악한 내담자의 증상과 호소문제를 토대로 성폭력 재발 위험성이나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살·자해 등의 위기 문제 개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담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내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즉, 상담자가즉각적인 의료 · 법률지원이나 가해자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한 내담자를 선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한다
- O 자살 및 자해 문제를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자가 병원을 연계하거나 보호자의 협조를 구하는 등 내담자의 위기 상태를 완화하도록 개입하였는지 확인한다.

(3) 사례개념화

 수퍼바이저는 상담자가 내담자 주 호소문제, 성폭력 피해 상황, 상담 의뢰 사유, 성폭력 피해로 인한 증상 및 관련 위험·보호요인 등을 탐색하여 사례개념화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사례개념화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사례개념화 내용〉2)

사례개념화 점검 내용	내용			
성폭력 피해 관련 상황	 성폭력 피해 관련 주 호소문제 및 증상 상담 의뢰 경위(자발적, 경찰, 학교, 성폭력 유관기관 등) 상담을 오게 된 계기(최근의 촉발요인이나 사건, 내담자의 기대 등) 주 호소문제에 대한 내담자 및 중요한 타인(의뢰인, 가족 등)의 인식과 바람 			
성폭력 피해 관련 호소문제 발생과 배경	 주 호소문제 문제 발생과 원인(내담자 요인 및 주변, 맥락) 성폭력 피해 관련 문제 발생 이전의 내담자 기능 및 상태 성폭력 피해 관련 문제 유지요인(개인내적 요인, 주변요인 등) 성폭력 피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과거력(상담경험 유무 등) 			
성폭력 피해 관련 문제와 내담자 패턴 이해	 가족 및 대인관계 패턴 인지능력 및 특징적인 사고패턴 (주요 신념, 가치, 사고영역에서 발견되는 특징 등) 핵심 정서 및 주요 정서 특징적인 행동 패턴 			
성폭력 피해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담자 자원 및 취약점	 생물학적 특징 및 문제(신체, 외모, 유전, 섭식, 수면, 건강상태 등) 개인적 자원과 약점(지적 · 신체적 강점 및 약점, 상담동기, 자기개념, 자기 표현력, 기능수준 등) 주변여건, 환경적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물리적 · 환경적 여건, 사회적 관계망, 친밀한 관계의 유무 및 관계의 질, 기타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등) 			
성폭력 피해 관련 문제 및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내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내담자의 특징과 주변 환경, 자해 문제의 발생과 유지, 기초적인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해 상담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이나 기법, 상담 전망 등 탐색 			
상담목표 및 계획	상담목표 • 내담자와 성폭력 피해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상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장·단기적 목표 수립			
	상담계획 • 상담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전략			

(4) 상담목표·전략 수립 및 상담관계 형성

- 수료하여저는 상담자가 앞에서 수립한 사례개념화를 토대로 상담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담목표는 상담의 방향이므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합의하여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는지 확인한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심리적 증상 감소뿐 아니라 이로 인한 다양한 생활 및 대인관계 문제가 상담의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

²⁾ 이규미(2017). '상담의 실제(학지사)'를 참고

^{24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따라서 단기와 장기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상담자가 체계적으로 목표 수립을 계획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전략은 상담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장의 '상담자 편'에 수록된 매뉴얼 내용을 토대로 개입한다.

 어떤 전략보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은 상담자의 성에 대한 편견없는 태도와 내담자의 처절하고 복잡한 심정을 깊이 공감하는 것이므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의 공감 수준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성폭력 피해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상담자 태도〉

- 내담자에게 침착하게 반응하면서 수용적 태도를 취한다. 특히 내담자가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당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 상담자는 내담자가 불안과 공포감을 직면하면서도 상담에 참여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용기와 노력을 격려한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를 믿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성폭력 피해는 내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하여, 내담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상담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피력하여, 상담 효과에 대해 내담자가 신뢰하고 상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격려한다.
- 내담자가 피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속도만큼 이야기하도록 강요나 압박하지 않는다. 즉 내담자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5) 보호자상담 구조화

- 아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성폭력 피해 청소년 내담자를 상담할 때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만나 이들을 지지 체계로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 부모 또는 보호자는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이들을 비난하거나 사건을 무시하는 등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담자는 보호자에게 성폭력 사건이 이들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알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 협력자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한다.
- 또한 보호자 역시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알게 되면 당황하거나 놀라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보호자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는 태도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상담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청소년의 반응과 증상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이때 보호자가 가정에서 청소년의 외상 반응이나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하도록 안내하였는지 확인하고, 보호자가 청소년의 위기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있는 방법을 안내 하도록 지도한다.

〈보호자가 알아야 할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

-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도록 잘. 잘못을 가리지 않는다.
- 청소년기는 주변을 많이 의식하는 특성이 있는 시기이므로, 타인을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옷차림, 늦은 귀가 등은 청소년기 자율성 욕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이런 특성이 성폭력 피해를 조장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 성폭력 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자 일상생활에 몰두하거나 어른들이 '다 잊어버리라'는 식의 얘기를 듣고 감정을 억압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긍정적·부정적인 보호자 반응〉

- 청소년 성폭력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는 보호자의 반응
 - 성폭력 문제는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예) '성폭력 피해는 네 잘못이 아니야' 등
 -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듣는다. 예) '그래 정말 힘들겠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다' 등
 - 성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 이를 인정해준다.
 예) '힘든데 잘 견디고 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너처럼 했을 거야' 등
- 청소년 성폭력 피해를 악화시키는 보호자의 반응
 - 성폭력 피해를 의심하는 태도는 청소년에게 상처가 된다.
 예)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니', '너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 등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태도는 청소년의 피해를 악화시킨다. 예) '그날 왜 그렇게 치마를 짧게 입었니?', '아무리 친해도 그 방에 왜 따라 들어갔어?' 등
 - 성폭력 피해에 대해 함구할 것을 요구하는 태도는 청소년의 회복에 방해가 된다. 예) '이 일을 나 말고 누구한테 말했니?',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말이라' 등

(6) 상담자 자기점검

 상담 초기에 상담자의 자기점검 및 소진 방지를 위해 유의해야 할 것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상담자의 부담감을 자각하고 다루는 일이다. 따라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위기 사례로 불안, 부담을 느끼는지를 확인하고,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26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O 또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내담자의 입장에서 개입하고 있는지,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점검한다. 이때 성 또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이 상담에 영향을 주므로, 이와 같은 이슈가 상담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상담자로서의 자기점검〉

- 나는 '변화하는 주체로서 내담자'를 바라보고 있는가?
- 내담자의 모습을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만 이해하려 한 적은 없는지
- '내담자가 내담자 같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 나는 '내담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내담자를 '불쌍한'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은지
 - 내담자의 치유 방향과 목표에 대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 나는 '내담자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가?
 - 내담자가 요청하면 대신 처리해주려 하거나, 거절할 경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 가해자나 주변인, 관계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내담자에게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지, 혹시 내가 내담자를 대신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지
- 나는 '성폭력은 순결이나 정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 '이런 일을 겪고도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지
- 나도 모르게 '성에 대한 억압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나는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법적/제도적 해결방법만을 사건의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 제도적 방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현재 한계점과 어려움만을 이야기하고 사건해결의 다른 가능성들을 찾지 않은 채 지원을 종료하려고 하는지
- 나는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 성폭력을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내담자가 호소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움직이기보다 무력감 속에서 내담자의 호소와 감정을 회피한 적은 없는지

[출체 권주희 외(2008). 성폭력 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가이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내용 참조·수정.

◈ 상담 초기 슈퍼바이저가 확인해야 할 자문 및 슈퍼비전 체크리스트

- 상담자는 평가를 통해 내담자의 외상 증상과 위험 수준 평가 기준을 알고 있는가?
- 상담자는 성폭력으로 인한 위험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였는가?
- 상담자는 내담자 위기 수준에 맞춰 위기개입 조치 및 안전절차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 상담자는 내담자가 위기 상황인 경우, 적합한 기관에 연계하였는가?
- 상담자는 성폭력 피해로 유발된 문제에 대해 위험요인, 보호요인을 파악하였는가?
- 상담자는 성폭력 피해 관련 문제에 대해 사례개념화를 할 수 있는가?
- 상담자는 사례개념화에 맞춰 상담 목표 및 전략을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 상담자는 성 또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고 있는가?
- 상담자는 보호자상담 시 보호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개입 하였는가?
- 상담자는 보호자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과 증상을 이해하고, 위기 상황 시 가정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는가?

2) 상담 중기 자문 및 슈퍼비전

(1) 외상후 스트레스(PTSD) 및 위기 수준 평가

- 수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중기에도 내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위험 수준을 재점검하여 중상이 얼마나 완화되거나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 이때 내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및 관련 증상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면, 상담 초기에 이와 같은 증상을 멈추기 위해 시도한 방법들을 함께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2) 성폭력 피해 관련 감정 탐색 및 해소

- 상담 중기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 증상 및 호소 문제를 개입하는 것이 핵심
 이므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상담에서 이와 같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오 수선 상담자가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내담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탐색하고,
 이와 같은 감정을 상담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지 점검한다.
- O 이때 내담자가 성폭력 사건 관련 감정을 인식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워하면 일반 적인 감정부터 시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상담자가

2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성폭력 피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변화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상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을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정 탐색 질문들〉

- 성폭력 피해 사건 직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성폭력 피해 사건 직후에 어떤 기분이었나요?
- 성폭력 피해 사건 이후에 나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 주변사람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했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호흡법 등 이완 방법을 적시에 활용하는지를 점 검하고, 만일 상담자가 다양한 이완법에 익숙하지 않다면 슈퍼비전 시 함께 시 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3) 성폭력 사건 재구성

- 성폭력 사건관련 외상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표현하고 재경험하게 하는 등 단계적으로 노출하도록 개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내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앞으로 상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등을 설명하는 것이 개입의 시작이므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O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아래와 같은 심리교육을 통해 내담자에게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지적 대처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심리교육에 포함될 내용〉

- 정상화: 외상 후에 나타난 반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정당화: 현재 경험하는 증상은 외상 사건에 의해 비롯된 결과다.
- 외상 반응에 대한 기술: 관련 증상들을 설명한다.
- 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 심상 노출과 치료 과정을 설명한다.
 - 다음으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성폭력 사건을 조망하도록 개입하는지 모니터링한다. 이때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공감하면서 개입하는지 점검한다.

(4) 인지적 대처 훈련

- 상담자가 앞에서 성폭력 사건 재구성 작업을 하면서 내담자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상담자가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지, 그때 경험하는 감정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부적응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찾아 오류를 인식 하고, 이를 수정하여 대안적인 사고 및 현실적인 생각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개입하는지 점검한다.
- 이 위의 성폭력 사건 재구성과 인지적 대처 훈련 과정을 마무리 할 때 내담자가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한 자기감정과 사건의 의미를 재구조화하여, 미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상담자 개입이 적절하였는지 확인하다

(5) 보호자 상담

- 아 슈퍼바이저는 상담 중기에 상담자가 상담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정과 재구성을 위한 개입을 할 때,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도 이와 같은 상담 과정을 설명하고 내담자가 상담 중에 정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등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상담 과정의 협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보호자에게 이완법이나 그라운딩 기법과 같은 안정화 기법을 안내하여 가정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내담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상담자 소진 예방

- 상담 중기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성폭력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위험 상황에 대한 위기 개입을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소진에 빠지지 않도록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O 만일 상담자의 소진이 심하면, 내담자의 성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상담자의 역전이 이슈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만일 상담자에게 개인상담이 필요하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상담자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한다.

◈ 상담 중기 슈퍼바이저가 확인해야 할 자문 및 슈퍼비전 체크리스트

-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폭력 관련 외상 및 위기 수준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였는가?
- 상담자는 성폭력 사건으로 경험하는 내담자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상담자는 성폭력 사건으로 경험하는 내담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었는가?
- 상담자는 내담자가 부정적 감정 완화를 위해 이완법 등 안정화 기법을 습득하도록 안내하였는가?
-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성폭력 사건 재구성을 위해 심리교육을 하였는가?
- 상담자는 내담자가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하여 재구성하도록 개입하였는가?
- 상담자는 성폭력 사건 관련 내담자의 핵심 부정적 또는 비합리적 사고가 무엇인지 파악 하였는가?
- 상담자는 내담자가 성폭력 사건 관련 비합리적인 사고를 파악하고 변화시키려고 개입하였는가?
- 상담자는 보호자가 내담자의 성폭력 사건 관련 감정을 이해하고 사건을 재구성 개입 과정에 협조자로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는가?
- 상담자는 위기 사례로 인해 스스로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가?

3) 상담 후기 자문 및 슈퍼비전

(1) 외상후 스트레스(PTSD) 및 위기 수준 평가

 아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초기, 중기에 실시했던 외상후 스트레스 및 위험수준을 평가하여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증상 및 호소 문제의 변화를 타진하여 적절한 시기에 상담 종결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는지 확인한다.

(2) 성담 성과 평가

-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성폭력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감소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내담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상담자가 상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상담 초기, 중기, 후기에 실시한 외상후 스트레스(PTSD) 위험 수준 평가 도구나 그 밖에 상담목표에 적합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상담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는지 지도한다
- 아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상담 성과 및 내담자 변화 이유,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들을 파악하고, 상담 종결 후에도 내담자가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지도한다.

(3) 스트레스 대처행동 습득

-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새롭게 시도한 대처방법을 지지하고 함께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상담자가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내담자에게 적합한 것을 상담에서 논의하고 연습해보도록 한다.
-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시도한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성공 사례 또는 실패 사례가 있다면, 각각의 상황과 이유를 상담에서 나누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슈퍼비전에서 다룬다.

(4) 성교육

- 수퍼바이저는 필요한 경우, 내담자가 성폭력 범죄를 재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담 중에 성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특히 성적의사결정에 대한 개념을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성에 대한 자기 생각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 이와 같은 성적의사결정을 위해 내담자의 분명한 의사소통 방식, 올바른 성 지식, 성폭력 개념 및 대처방법 등을 상담자가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때 자칫 내담자가 성폭력 피해에 대해 비난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성교육할 때 유의할 태도 등을 세심하게 설명한다.

(5) 강정 및 잠재력 강화

O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위험 수준이 감소하고, 호소 문제가 해결되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미래를 계획하고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상담 종결 및 추수상담 계획

- 상담 목표를 달성하면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 종결을 합의하고, 이를 준비할수 있도록 지도한다.
- ㅇ 내담자들은 종종 상담 종결에 합의 후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32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갖기 마련이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상담자와의 이별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담 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과 염려 등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상담자가 상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들을 지도한다.

- O 일반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2주, 1달, 2달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종결을 진행하고, 상담 종결 후 3개월 또는 6개월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만나는 추수상담을 하도록 지도한다.
- 외상후 스트레스의 경우, 자극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중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수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위험 중상 및 문제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상담자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 종결과 추수상담 사이에 다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자가 안내함으로써 내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상담 후기 슈퍼바이저가 확인해야 할 자문 및 슈퍼비전 체크리스트

-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폭력 관련 외상 및 위기 수준을 평가하여 상담 종결이 가능한지 확인 하였는가?
- 상담자는 상담 성과를 확인하였는가? 상담 성과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였는가?
- 상담자는 필요한 경우, 성교육을 실시하고, 내담자가 미래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입하였는가?
- 상담자는 상담 종결 후,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하였는가?
-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 종결을 합의하고, 종결에 대한 내담자 감정을 확인하였는가?
- 상담자는 내담자와 추수상담을 계획하였는가?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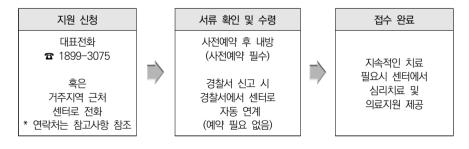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및 정보

1. 해바라기센터 지원 내용 및 현황3)

1) 지원내용

- O (상담지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 이 (의료지원)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조치, 산부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진료(외상 및 후유증 치료, 성병감염 여부 등 검사).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수사·법률지원)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무료법률지원사업, 국선변호사 연계 등
-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후유증 치유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지원

2) 신청방법



^{3) &#}x27;해비라기센터'(여성가족부)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wvs/cs_wvs_f005.do)

4) 해바라기센터 현황

• 통합형 해바라기 센터(총 16개소)⁴⁾

센터명			주 소	위탁병원		연락처	
OLI	0110	х э.	7 FAF 1 40 FAHFI 25	서울대	본관	02-3672-0365	
서울	서울 종로구 동숭동 1-49 동숭빌딩 2층		병원	별관	02-745-0366, 0367		
서울북부	서울	동대	군구 망우로 82 서울북부해비라기센터	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서울중부	서울	중구	을지로 245(을지로 6가 18-79)	국립중앙의료원		02-2266-8276	
부산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내 융합의학연구동 6층	부산대 병원		051-244-1375	
대전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 병원		042-280-8436 042-280-8437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울산병원		052-265-1375	
	거점	경	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79번길 7 도병원약국 3층			031-217-9117	
경기 남부	==1	경.	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 병원	별관	031-215-1117	
	통합	야	주대병원 내 경기남부해비라기센터 거점	02	응급	031-216-1117	
경기북서부	77 70H 507 517 05 4 07 77 17 57 504 5		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501호	명지병원	통합	031-816-1375	
3/15/17	3/I	т.9,	시 릭하는 외향도 00~1 구니프니사 0층 001호	6시6면	응급	031-816-1374	
강원서부	강원	춘천	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강원대병원	033-252-1375		
강원동부			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1원 별관	강릉동인병원		033-652-9840	
강원남부			시 일산동 162-33 산기독병원(문창모기념관 4층)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033-735-1375	
전북서부	전북	익산	시 무왕로 859 원광대병원	원광대 병원		063-859-1375	
전남	전남	영광	군 영광읍 신남로265, 6층	영광기독병원	기독병원 061-351-4375		
경북동부	경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루기관 지하3층 <mark>포항 성모병원 </mark>		054-278-1375			
경남서부			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료센터 3층	경상대 병원	055-754-1375		
ᅰᄌ	본관	¥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2층(연동, 한라병원)	중디(바이	본관	064-749-5117	
제주	별관	¥	제주 제주시 남녕로 5-3 3층	한라병원	별관	064-748-5117	

^{4) &#}x27;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wvs/cs_wvs_f005.do)

• 아동형 해바라기 센터(총 7개소)

센터명	주 소	운영기관	연락처
서울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연세의료원	02-3274-1375
대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40길 32(동인동2가 244-1) 2,3층	경북대병원	053-421-1375
인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	가천대 길병원	032-423-1375
광주	광주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전남대병원	062-232-1375
경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분당차병원	031-708-1375 031-708-1376
충북	충북 충주시 봉현로 222(교현동, 보성빌딩 4층) 보성빌딩 4층	건국대 충주병원	043-857-1375 043-857-1376 043-857-1377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뱅크빌딩 2층	전북대병원	063-246-1375

• 위기지원형 해바라기 센터(총 16개소)

센터명	주 소	운영기관	연락처
서울동부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1층	경찰병원	02-3400-1700
서울남부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보라매병원	02-870-1700
부산동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	부산의료원	051-501-9117
대구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대구의료원	053-556-8117 053-556-9117
인천동부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032-582-1170 032-582-1171
인천북부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280-5678
광주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층	조선대병원	062-225-3117 062-234-3117
경기북동부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의정부의료원	031-874-3117
경기서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2 한도병원 별관 3층	한도병원	031-364-8117
र्ठेर्प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	043-272-7117 043-274-7117
충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1층	단국대병원	041-567-7117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로센터 지하 1층	전북대병원	063-278-0117
전남동부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순천성가롤로병원 별관	성기롤로병원	061-727-0117
경북북부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 1층	안동의료원	054-843-1117 054-843-2117
경북서부	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 김천제일병원 7층	김천제일병원	054-439-9600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마산의료원 별관 2층	마산의료원	055-245-8117 055-244-8117

─ 부록 :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및 정보

2.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Q&A⁵⁾

1) 불법촬영

- Q-1 연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유포하려는 의도는 없고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싶은데 불법촬영에 해당하나요?
- A-1 네, 불법촬영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연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른 불법촬영입니다.
- Q-2 퇴근길 지하철 반대편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저의 행위가 불법촬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 촬영에 해당하나요?
- A-2 촬영 목적에 따라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끼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에 따른 불법촬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비동의 유포

- Q-1 지금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의 일입니다. 예전 남자친구와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난으로 게임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게임에서이겨 제 나체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지인으로부터 전 남자친구가 SNS 대화방에 제 사진을 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전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삭제를 요청했지만 남자친구는 '네가 자발적으로 찍어서 보냈으니 삭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비록 전 남자친구에게 제 스스로 사진을 보내긴 했지만 남들과 함께 보길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 A-1 네, 전 남자친구의 "비동의 유포"는 범법행위입니다. 촬영당시 자기 신체를 직접 찍어 상대에게 보낸 경우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SNS 등에 전시·배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5) 20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 개입 매뉴얼

3) 유포협박

- 0-1 최근 한 여성을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랜덤채팅을 하면서 그 여성과 급속도로 가까워 졌고 우리는 서로의 SNS 주소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여성과 화상채팅을 한 뒤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화상채팅을 하며 함께 음란행위를 했었는데 얼마 후 그 여성이 회상채팅 녹화 영상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 본인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상을 제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 여성을 유포협박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자발적으로 화상채팅에 참여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 여성의 행동은 유포협박, 공갈 등에 해당됩니다. 화상 채팅 녹화 A - 1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14조 3]에 따른 유포협박죄가 성립하며, 위 경우처럼 협박과 더불어 금전을 요구했다면 [형법 제350조] 에 따라 공갈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 $\left(0-2\right)$ 저는 평소 SNS를 즐겨하는 중학생인니다. 얼마 전 한 남성과 SNS에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해진 후 그 남성이 저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친한 친구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저의 얼굴사진. 손사진, 눈사진, 입술사진 등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이후 그 남성의 요구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혼자만 간직하겠다며 저의 속옷 사진,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남성은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하자고 요구했고 제가 거부하자 그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보냈던 사진들을 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사진을 유포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사실은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장난이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남성으로부터 실제 유포할 생각이 없었고 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2 남성의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하나인 유포협박죄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14조 3]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포 협박으로 음란행위를 강요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 제14조]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4) 합성물 제작

-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학교에서 친구들이 절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이상해 친한 친구에게 왜 그런지. (0-1)물어봤더니 같은 반 남자애가 제 얼굴과 포르노를 합성한 시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직접 확인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이 합성사진을 보고 저를 오해할까봐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와 같은 상황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인 합성물 제작 및 유포에 해당됩니다. 사람의 A – 1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합성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 부록 :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및 정보 ▮

5) 온라인 언어 성폭력 및 비동의 성적 이미지 전송

- Q-1 저희 반 단체 채팅방에서 얼마 전부터 한 남자 애가 자꾸 저에게 'OO는 얼굴은 별로인데 몸매는 예쁘다'며 몸평, 얼평을 했습니다. 그 채팅을 본 다른 남자 애는 'OO는 가슴이 큰걸 보니 남자들이 많이 따먹어서 그럴꺼야', 'OO이에게 대딸받고 싶다'라며 채팅방에서 성적인 농담을 계속 했습니다. 너무 불쾌한데 이걸 그냥 넘겨야 할까요? 반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 A-1 위 채팅방에서 친구들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외에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일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2 채팅방에서 채팅하고 있는데, 채팅방에 계속해서 음란한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계속 음란한 글과 사진을 보내서 결국 채팅방에서 나왔습니다. 채팅방에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지속적으로 이런 글과 사진을 올리는 것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 A-2 채팅방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 혐오감을 조성하는 말, 그림 등을 올리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1)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비동의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⁶⁾ 본 자료에 수록된 법조항이 재·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의 내용인지 확인하고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moleg.go.kr/)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 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회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17, 2014.5.28.〉
- 2.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 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유포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 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부록 :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및 정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형법 제 350조(공갈)

-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합성물 제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5) 온라인 언어 성폭력 및 비동의 성적 이미지 전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BP 기반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클리닉 운영 모형 매뉴얼

인 쇄: 2020년 12월 발 행: 2020년 12월

발 행 인 : 이기순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33 / F. (051)662-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전우용사촌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